

# 온라인 필기시험 유의 사항 및 부정행위 규정 안내

##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및 응시자격 서류의 미제출, 허위작성, 위조, 기재오기, 누락 및 연락 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입니다.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협회에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지정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자격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일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을 취소함
2. 합격자발표 후라도 응시자격 부적격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3. 장애인 수험자로서 응시편의 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홈페이지(<http://www.kafc.or.kr>)에 게시된 “장애인 수험자 원서접수 유의사항 안내문”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의제공을 요구하지 않거나 해당 장애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장애인수험자 일반수험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하여야 함(응시편의 제공 불가)
4. 수험자는 시험 시작 20분전까지 **신분증**을 소지하고 온라인 응시 웹사이트에 접속하며 시험 감독을 위한 노트북 또는 PC 웹캠 및 휴대폰 셋팅을 실시합니다.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공무원증, 외국인 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 거소증, 신분확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 온라인 응시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 공지사항 <필기시험 안내>를 꼭 사전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 시작 10:00 이후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5. 수험자는 매 교시 수험자 입실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각이나 결시자나 중도포기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시험시간 중에는 **중도 자리 이탈이 불가하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여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배탈, 설사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 자리 이탈이 있을 경우 시험 재응시가 불가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하여야 하며 재 입실 및 다음시험 응시 불가(시험무효 처리)**

7. 수험자는 메모 사용(종이와 불펜)이 불가합니다. 또한 마스크, 이어폰, 귀마개 착용 금지합니다.
8. 수험자는 듀얼모니터를 사용할 수 없으며, **기타 전자기기, 스마트 워치**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불필요**)
9. 부정행위로 인해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휴대전화는 시계대용으로 사용불가** 합니다.
11.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 **부정행위처리 규정**

**부정행위 적발 시, 경고 및 퇴장조치 됩니다.**

1. 시험 중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행위
2. 시험 중 수험자 본인 외 다른 사람이 확인될 경우
3. 두 손이 반드시 휴대폰 화면 안에 있어야 하며, 한손이라도 아래로 내려가거나 화면 밖을 나갈 경우
4. 시선이 시험지 모니터 외에 다른 곳을 보는 행위
5. 시험 감독의 지시에 불이행 하는 행위
6. 대리 응시나 응시자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응시하는 행위
7. 타인이 옆에서 응시자에게 풀이방법을 알려주거나 응시자가 다른 응시자에게 풀이 방법을 알려주는 행위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9. 인터넷 검색하는 행위
10. 수험자가 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 펜, 시각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

11. 문제 및 답안지를 복사/캡처/녹화/촬영하여 문제 및 답안을 유출하는 행위

※ 문제 및 답안 유출 시에는 민/형사상 처벌과 벌금 책임이 있습니다.

12. 시험 중 자리를 비우는 행위

13. 외부 프로그램 ide,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사용하는 행위

14. 필기된 종이, 포스트잇 등을 응시자 주변에서 확인되는 행위

15. 손바닥에 글자를 필기할 경우

16. 마스크를 쓰거나 얼굴을 제대로 노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진행하는 행위

17.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제출서류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 한 행위

18.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